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국 민 연 금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정은경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민연금법 개정('25.4.2 개정, '26.1.1 시행)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율을 임의가입자 추후 납부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에도 반영되도록 하고, 타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임의가입자 추납보험료율에 법 개정사항 반영(안 제62조)

임의가입자 추납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법 제88조를 따르도록 함

나.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74조)

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(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, 「국채법」)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

다. 국민연금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추가(안 별표2의3)

가입자 확대 및 관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거주자의 간이지급명세서,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,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 자료 추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대통령령 제 호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0. 1. ~ 11. 1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제2항 중 “금액의 1천분의 90에 해당하는”을 “금액에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”으로 한다.

제74조제3항제6호 중 “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2호”를 “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3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“「국채법」 제3조”를 “「국채법」 제2조제1호”로 한다.

별표 2의3 제2호마목 중 “일용근로소득내역·납세”를 “거주자의 간이지급명세서,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, 일용근로소득내역·납세”로 하고, 같은 호 차목 중 “자료”를 “자료,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자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2조(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) ① (생략)	제62조(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9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천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금액에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 ----- -----.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74조(기금의 운용사업 등) ①·② (생략)	제74조(기금의 운용사업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금 증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③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자	6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3호----- ----- --
7. ~ 11. (생략)	7. ~ 11. (현행과 같음)
④ 법 제102조제3항 단서에 따	④ -----

른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	-----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6조에 따른 증권	-----
시장 외에서 매매되는 다음 각	-----
호의 채권의 유통 수익률 중 높	-----
은 수익률로 한다.	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국채법」 제3조에 따른 국채	2. 「국채법」 제2조제1호----- 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604